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 일정 및 면적, 배정 대상, 세대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입주자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 6개동 / 총 556세대 중 일반 분양 275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입주예정 : 2028년 09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구분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총 공급 세대수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 민영 주택 | 59A | 59.9371 | 21.0341 | 80.9712 | 48.6417 | 129.6129 | 202 | 20 |
| | 59B | 59.9137 | 22.5220 | 82.4357 | 48.6227 | 131.0584 | 71 | 7 |
| | 84B | 84.4545 | 24.0037 | 108.4582 | 68.5386 | 176.9968 | 1 | 0 |
| | 84C | 84.8080 | 24.0710 | 108.8790 | 68.8255 | 177.7045 | 1 | 0 |
| 합계 | | | | | | | 275 | 27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 85㎡이하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 59A | 59B | 84B | 84C | 계 |
|---------------|-------|---------|-------|-----|-----|---------|
| 국가유공자 | | 5(25) | 2(10) | - | - | 7(35)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4(20) | 1(5) | - | - | 5(25)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4(20) | 1(5) | - | - | 5(25) |
| 중소기업 근로자 | | 4(20) | 2(10) | - | - | 6(30) |
| 장애인 | 경기도 | 1(5) | 1(5) | - | - | 2(10) |
| | 서울특별시 | 1(5) | - | - | - | 1(5) |
| | 인천광역시 | 1(5) | - | - | - | 1(5) |
| 계 | | 20(100) | 7(35) | - | - | 27(135) |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괄호()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500%) 세대수입니다.

■ 공급일정(예정)

| 구분 | 공급일정(예정) | 비고 |
|--------------|-----------------------------------|---|
| 입주자모집공고 | • '26년 02월 27일(금) 예정 |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https://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com) |
| 건본주택 개관 | • '26년 03월 06일(금) 예정 | -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건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5)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 '26년 03월 09일(월) 예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 • '26년 03월 17일(화) 예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 계약체결 | • '26년 03월 30일(월) ~ 04월 01일(수) 예정 | -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건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5)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및 필요서류 건본주택 문의)

II

특별공급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전용 85㎡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caption>[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유의사항

- 상기 공급일정 및 면적 등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견본주택, 당사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com>),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거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